

# 교수 업적 평가 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1997. 05. 27.  
3차 개정 2019. 06. 25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심의하여 교수업적평가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)** 본교의 교수업적 평가를 합리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교수의 연구와 학문적 수준을 높임은 물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의 발전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정관, 학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.

## 제2장 위원회 및 구성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가의 기본원칙 및 운영방향 설정
2. 제도개선 계획 수립
3. 삭제 (2007.12.3)
4.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5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**교육연구처장**, **학생행복처장**, **기획평가처장**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7.12.3., 2019.06.25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**교육연구처장**으로 한다. (개정 2019.06.25)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전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이 위원회는 **교육연구처**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. (개정 2019.06.25)

## 제3장 운영

**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)**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, 관계부서 또는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

거처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199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1307, 2007.12.4)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